

의안번호	2204765
의 퇴 인	김위상 의원
회 답 일	2024.10.22.
추 계 번호	24B439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6조의4 (불리한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법」 제1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불리한 처우 등을 받은 날(불리한 처우 등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항) 1. 제76조의3제4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2.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재량규정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나 불리한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제2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함(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109조(벌칙)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 또는 제76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항)	의무규정
3	안 제115조의2(과태료)	사용자가 제76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함(제2항) 3의2. 제76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6조의4(불리한 처우에 대한 시정 신청)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참조
2	안 제109조(벌칙)	—	• 미대상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벌금 부과대상이 확대되어 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대상 사유에 해당함
3	안 제115조의2(과태료)	—	• 미대상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되어 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대상 사유에 해당함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임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자에게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할 경우에 대한 시정 신청으로 인해 노동위원회의 인건비 및 행정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장래에 발생할 시정 신청물량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어려움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발생할 노동위원회의 시정 신청 수와 심리로 인한 행정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소요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음

- 개정안은 김위상위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7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